

영등포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7.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정원 1,307명의 2.5%인 33명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동주민센터 통·폐합 계획에 의한 4개동 폐지와 외국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의 의무적 감축

- 감축인원 : △33명
 - 일반직 : △11명(5급1명, 8급10명)
 - 기능직 : △22명(10급 22명)

○ 변경정원 : 1,307명 ⇒ 1,274명

- 일반직 : 993명 ⇒ 982명, 기능직 : 301명 ⇒ 279명

나. 행정기구별 정원의 조정

○ 구 분 청

구 분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합 계	현재	890	27	132	215	257	172	87
	개정	886	29	140	222	254	172	69
	증감	△4	2	8	7	△3	-	△18
일반직	현재	660	27	124	197	218	94	-
	개정	674	29	132	204	215	94	-
	증감	14	2	8	7	△3	-	-
기능직	현재	230	-	8	18	39	78	87
	개정	212	-	8	18	39	78	69
	증감	△18	-	-	-	-	-	△18

○ 보 건 소

구 분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합 계	현재	93	10	15	25	25	12	6
	개정	99	11	15	27	27	13	6
	증감	6	1	-	2	2	1	-
일반직	현재	82	10	15	25	23	9	-
	개정	88	11	15	27	25	10	-
	증감	6	1	-	2	2	1	-
기능직	현재	11	-	-	-	2	3	6
	개정	11	-	-	-	2	3	6
	증감	-	-	-	-	-	-	-

○ 동주민센터

구 분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합 계	현재	284	22	44	50	69	48	51
	개정	249	18	36	44	60	44	47
	증감	△35	△4	△8	△6	△9	△4	△4
일반직	현재	231	22	44	50	69	46	
	개정	200	18	36	44	60	42	
	증감	△31	△4	△8	△6	△9	△4	
기능직	현재	53	-	-	-	-	2	51
	개정	49	-	-	-	-	2	47
	증감	△4	-	-	-	-	-	△4

나. 한시정원의 일반정원으로 전환

○ 전환인원 : 7명

- 일반직 5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

○ 한시정원 내용

-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 4명

(일반직 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

-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업 : 1명

(일반직 7급 1명)

- 복식부기보급 사업 : 2명(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 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8조(한시정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3호) 제8조(정원책정기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정원 1,307명의 2.5%인 33명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동주민 센터 통·폐합 계획에 의한 4개동 폐지와 외국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 정원 1,307명의 2.5%인 3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다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는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7. 18.

보 고 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개정2006.4.2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2008.3.4>